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584 호 2026. 10. 15.(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210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26-21)]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216호[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협의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217호[하천 점용허가 고시 요청(26-74)]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218호[하천 점용허가 고시 요청(26-75)]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219호[하천 점용허가 고시 요청(26-73)]	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221호[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2-674호선)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의]	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222호[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7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53호[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54호[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63호[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허가26-65호)]	3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64호[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허가26-66호)]	3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65호[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허가26-67호)]	3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66호[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허가26-68호)]	3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68호[도로점용(굴착)허가 기간연장 공고(허가26-53호)]	3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70호[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행정예고]	3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78호[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79호[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81호[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허가26-69호)]	7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89호[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허가26-70호)]	8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90호[매곡공원 조성사업 보상 최종 협의 공시송달 공고]	81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 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 ☎241-7125, 행정 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21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가. 허가번호: 26-21

나. 허가 연월일: 2026. 10. 8.

2. 점용·사용의 목적: 농소2배수지 신설사업 지반조사 용역

3. 점용·사용의 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산35-1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일시) 20m²

나. 기 간: (일시) 2026. 10. 15. ~ 2026. 10. 30.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137번지

6.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신고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21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협의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고시내역

협의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기간	점용목적
	성 명	주 소		당초	변경		
제2017-5호	울산 북구청 관광진흥과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당사~판지 일원	8,335 (일반산책로 4,800m, 데크산책로 560m)	8,335 (일반산책로 5,073m, 데크산책로 273m)	'17. 06. 15. ~ '32. 06. 14.	강동누리길 조성사업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217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8*		
점 용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004번지	하 천 명 칭	○ 동천
점 용 내 용	○ 수위관측소 설치	점 용 면 적	○ 22.5㎡
점 용 기 간	○ 2026. 10. 12. ~ 2099. 12. 31.(영구)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218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체육과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		
점 용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780-4번지	하 천 명 칭	○ 동천
점 용 내 용	○ 이음새 낙화놀이 개최	점 용 면 적	○ 400m ²
점 용 기 간	○ 2026. 10. 13.(화) ~ 2026. 10. 17.(토)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219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17길 24*		
점 용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0번지 외 1필지	하 천 명 칭	○ 명촌천
점 용 내 용	○ 토지의점용	점 용 면 적	○ 314.3m ²
점 용 기 간	○ 2026. 10. 13.(화) ~ 2027. 8. 31.(목)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221호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2-674호선)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4-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2-674호선)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조서

가.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674	8	국지 도로	36	소2-88	신천동 748	일반 도로	-	-	-

나.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소로2-674	• 노선 신설 - B=8m, L=36m	• 인근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 계획시설(도로) 신설

2. 관계도면 :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에 비치)

※ 토지e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2052-241-7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222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두레교회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8길 12	소유주 (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2 (제3종 시설물의 범위)의 범위에 해당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 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 기 정기점검 실시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 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 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 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 출대상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35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에 ‘재난피해자 가족지원·소통전담팀’ 신설 (안 제7조제2항 및 제7조제4항)
- 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에 ‘재난피해자 가족지원·소통전담팀’ 신설(별표 1)
- 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업무에 ‘재난 피해자 가족지원·소통전담팀’ 신설(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2층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052)241-7891, 팩스번호 : 052)241-7899
- 전자우편(E-mail): sujy0099@korea.kr

4. 참고사항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규칙명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별표 1”을 “재난피해자 가족지원·소통 전담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별표 1 및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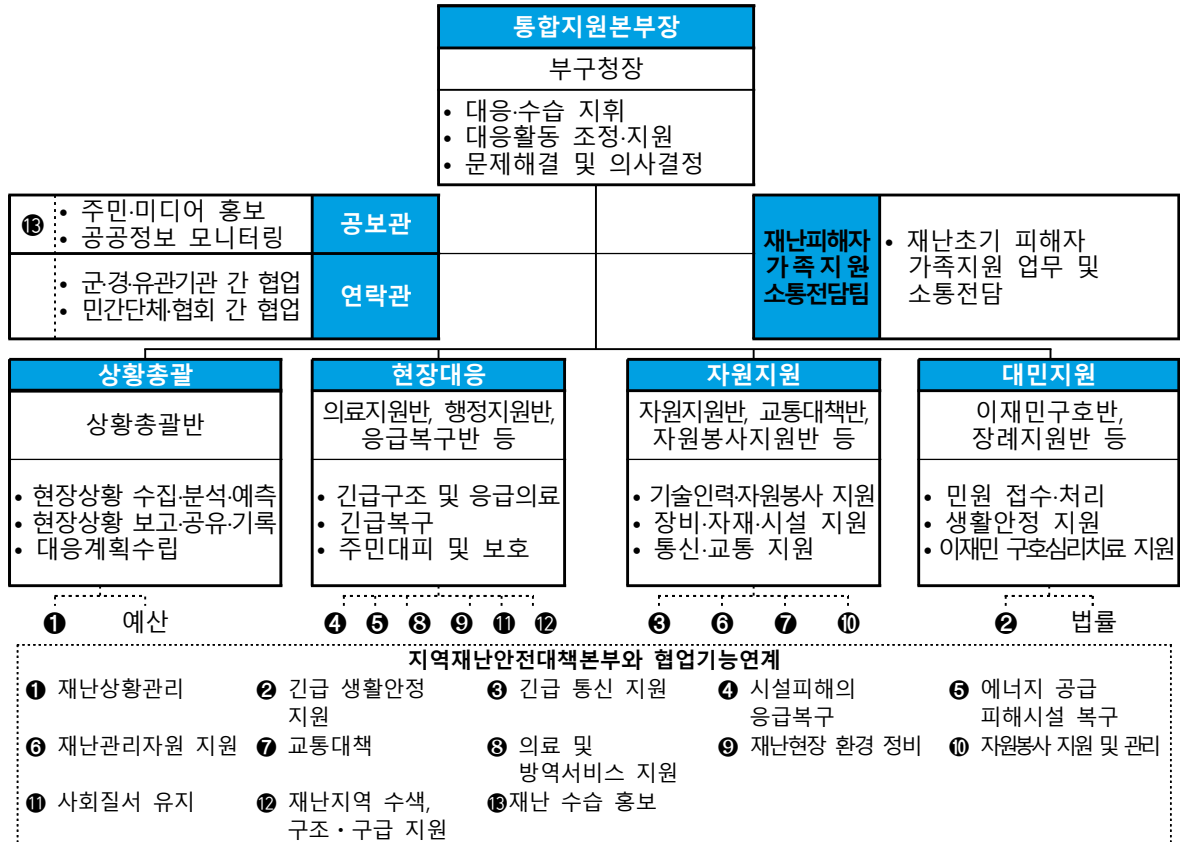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제7조 관련)

□ 복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부 단 체 장)	•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 피해자 가족 소통 전담
공 보 관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연 락 관	• 군·경·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간 협업
상 황 총 괄 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현 장 대 응 반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자 원 지 원 반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대 민 지 원 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생 략)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u>별표 1</u> 및 <u>별표 2</u> 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② ----- <u>재난피해자 가족지원·소통 전담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u>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 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④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u>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u>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제7조 관련) □ 복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 재난현장 지원 및 협력체계 표준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제7조 관련) □ 복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 재난현장 지원 및 협력체계 표준																																		
[별표 2]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주요임무</th></tr> </thead> <tbody> <tr> <td>통합지원본부장 (부단장)</td><td>•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td></tr> <tr> <td>공보관</td><td>•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계 정보공유</td></tr> <tr> <td>연락관</td><td>• 군·경·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간 협업</td></tr> <tr> <td>상황총괄반</td><td>•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td></tr> <tr> <td>현장대응반</td><td>•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td></tr> <tr> <td>자원지원반</td><td>• 긴급동원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td></tr> <tr> <td>대민지원반</td><td>•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 구호·심리지원 • 정례지원 등</td></tr> </tbody> </table>	구분	주요임무	통합지원본부장 (부단장)	•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공보관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계 정보공유	연락관	• 군·경·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간 협업	상황총괄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현장대응반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자원지원반	• 긴급동원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대민지원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 구호·심리지원 • 정례지원 등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주요임무</th></tr> </thead> <tbody> <tr> <td>통합지원본부장 (부단장)</td><td>•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td></tr> <tr> <td>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반</td><td>•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 피해자 가족 소통 전담</td></tr> <tr> <td>공보관</td><td>•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계 정보공유</td></tr> <tr> <td>연락관</td><td>• 군·경·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간 협업</td></tr> <tr> <td>상황총괄반</td><td>•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 주요인사 방주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td></tr> <tr> <td>현장대응반</td><td>•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td></tr> <tr> <td>자원지원반</td><td>• 긴급동원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td></tr> <tr> <td>대민지원반</td><td>•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심리지원 • 정례지원 등</td></tr> </tbody> </table>	구분	주요임무	통합지원본부장 (부단장)	•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반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 피해자 가족 소통 전담	공보관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계 정보공유	연락관	• 군·경·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간 협업	상황총괄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 주요인사 방주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현장대응반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자원지원반	• 긴급동원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대민지원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심리지원 • 정례지원 등
구분	주요임무																																		
통합지원본부장 (부단장)	•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공보관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계 정보공유																																		
연락관	• 군·경·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간 협업																																		
상황총괄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현장대응반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자원지원반	• 긴급동원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대민지원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 구호·심리지원 • 정례지원 등																																		
구분	주요임무																																		
통합지원본부장 (부단장)	•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반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 피해자 가족 소통 전담																																		
공보관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계 정보공유																																		
연락관	• 군·경·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간 협업																																		
상황총괄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 주요인사 방주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현장대응반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자원지원반	• 긴급동원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대민지원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심리지원 • 정례지원 등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재난수습 홍보 총괄
5. 통제관: 재난수습 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9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울산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세부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시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장 심수정(241-7891)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6 - 1354호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사회재난 피해자의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근거 규정 및 관련 서식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난피해자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규정 신설(안 제8조)
 -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근거 규정 신설
- 나. 재난피해자 ‘피해사실확인(신청)서’ 및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대장’ 서식 신설(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2층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052)241-7891, 팩스번호 : 052)241-7899
- 전자우편(E-mail): sujy0099@korea.kr

4. 참고사항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규칙명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KT []SKT []LGU+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 응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재난 구
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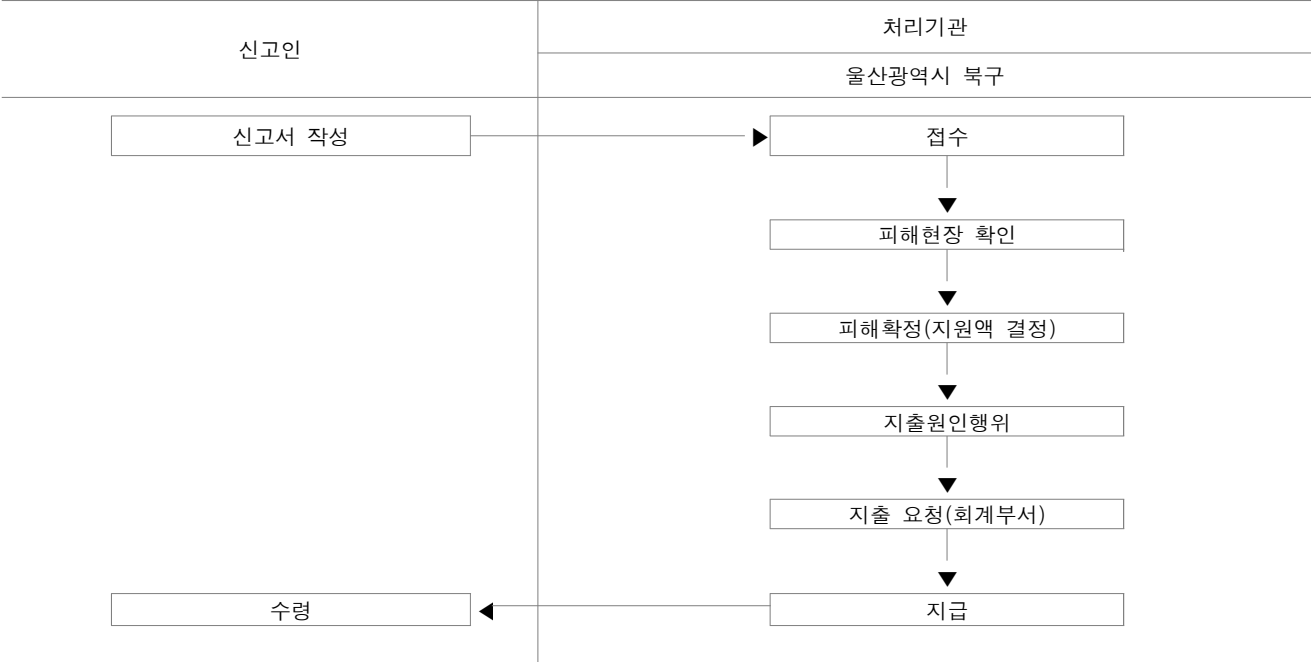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피해사실 [] 확인신청서
[] 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발급번호 : 제 -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피 해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내용	대상	단위	
	피해 규모	재난의 종류	
	피해물의 소재지	피해 일시	
용 도			
제 출 처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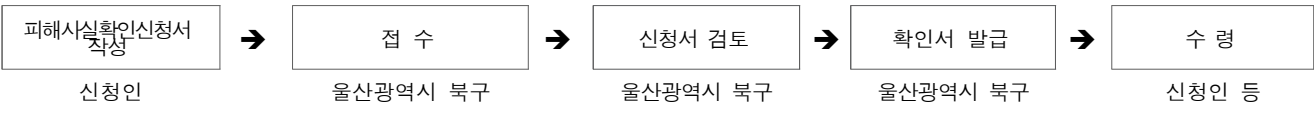
울 산 광 역 시 복 구 청 장

직인

유의사항

-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군 → ○○-00001
-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피해자			피해 내용			용도	제출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대상	피해 규모	피해 물의 소재지		

297mm×210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략)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u>별지 서식</u> 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 ----- <u>별지 제1호서식</u> -----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생략)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u>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u>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지 서식] (앞쪽)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위 책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라 하라하, []에는 해당되는 것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부 [] 형제 [] 기타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표백되는 사항은 여백에 기재하십시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주거 형태 []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비거주) [], 세입자 [], 공동주택 세입자 [] 연락처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KT [SKT [LG+ [T1 []] 이동통신 [] - - 통신사명 [] 가입자명 [] 휴대전화 [] - - 통신사명 [] 가입자명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 가족 수 [] 남() / 여()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용형태 수 [] 고용하고 있 [] 비정규직 / 전업주 [] 도시가스 사용 여부 [] 어 [], 부 [] 가연기종: []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3. 피해내용 [] 피해발생 일시 [] 피해발생 장소 []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무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추월 [] / 파업 [] / 실직 []) [] 확장 [] 사망·실종 [] 부상(무상 정도) [], [] 사업피해(추월 [] / 파업 [] / 실직 []) [] 사망·실종 [] 부상(무상 정도) [], [] 사업피해(추월 [] / 파업 [] / 실직 []) 재산 피해 시설물 [] ① [] ② [] ③ [] ④ [] ⑤ [] 음전선(배선·외관) [] ① [] ② [] ③ [] ④ [] ⑤ [] 건축·허가·[] ① [] ② [] ③ [] ④ [] ⑤ [] 문물 번호 [] ① [] ② [] ③ [] ④ [] ⑤ [] 피해 신고 [] ① [] ② [] ③ [] ④ [] ⑤ [] 출방 [] ① [] ② [] ③ [] ④ [] ⑤ [] 피해 주류 [] ① [] ② [] ③ [] ④ [] ⑤ [] 피해 청진 [] ① [] ② [] ③ [] ④ [] ⑤ [] 출자신청 여부 [] [] [] [] [] [] 4. 확인사항 [] 문질배대 신고 여부 [] 어 [], 부 [] 내용 [] 타 시·군·구 [] 어 [], 부 [] 내용 [] 피해신고 여부 [] 어 [], 부 [] 내용 []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자인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전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취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9mm×297mm(4삼지(00/a), 또는 용설지(00/a))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위 책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라 하라하, []에는 해당되는 것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부 [] 형제 [] 기타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표백되는 사항은 여백에 기재하십시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주거 형태 []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비거주) [], 세입자 [], 공동주택 세입자 [] 연락처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KT [SKT [LG+ [T1 []] 이동통신 [] - - 통신사명 [] 가입자명 [] 휴대전화 [] - - 통신사명 [] 가입자명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 가족 수 [] 남() / 여()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용형태 수 [] 고용하고 있 [] 비정규직 / 전업주 [] 도시가스 사용 여부 [] 어 [], 부 [] 가연기종: []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3. 피해내용 [] 피해발생 일시 [] 피해발생 장소 []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무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추월 [] / 파업 [] / 실직 []) [] 확장 [] 사망·실종 [] 부상(무상 정도) [], [] 사업피해(추월 [] / 파업 [] / 실직 []) [] 사망·실종 [] 부상(무상 정도) [], [] 사업피해(추월 [] / 파업 [] / 실직 []) 재산 피해 시설물 [] ① [] ② [] ③ [] ④ [] ⑤ [] 음전선(배선·외관) [] ① [] ② [] ③ [] ④ [] ⑤ [] 건축·허가·[] ① [] ② [] ③ [] ④ [] ⑤ [] 문물 번호 [] ① [] ② [] ③ [] ④ [] ⑤ [] 피해 신고 [] ① [] ② [] ③ [] ④ [] ⑤ [] 출방 [] ① [] ② [] ③ [] ④ [] ⑤ [] 피해 주류 [] ① [] ② [] ③ [] ④ [] ⑤ [] 피해 청진 [] ① [] ② [] ③ [] ④ [] ⑤ [] 출자신청 여부 [] [] [] [] [] [] 4. 확인사항 [] 문질배대 신고 여부 [] 어 [], 부 [] 내용 [] 타 시·군·구 [] 어 [], 부 [] 내용 [] 피해신고 여부 [] 어 [], 부 [] 내용 []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자인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전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취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9mm×297mm(4삼지(00/a), 또는 용설지(00/a))

현 행 개 정 안

[별지 서식] (뒷쪽)

(취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호민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성명 또는 번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호민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호민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성명 또는 번호)

전 문 문

1.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2. 부속 1에 의거하여 다른 두 가지(제1항 부속, 개인정보처리방침)를 동의, 「신원정보보장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신원정보제공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두 가지(제1항 부속, 개인정보처리방침)를 동의합니다.
3.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4. 부속 1에 의거하여 다른 두 가지(제1항 부속, 개인정보처리방침)를 동의합니다.

주 문 문

※ 이 신고서는 마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신고서

처리기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접수

처리결과 확인

처리결과(이행) 증명

지출입금명세서

지출 요건(취득부서)

지급

수납

지급

210mm×297mm (복합지(100g/㎡) 또는 동등지(100g/㎡))

[별지 제1호서식] (뒷쪽)

(취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호민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성명 또는 번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호민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호민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성명 또는 번호)

전 문 문

1.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2. 부속 1에 의거하여 다른 두 가지(제1항 부속, 개인정보처리방침)를 동의, 「신원정보보장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신원정보제공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두 가지(제1항 부속, 개인정보처리방침)를 동의합니다.
3.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4. 부속 1에 의거하여 다른 두 가지(제1항 부속, 개인정보처리방침)를 동의합니다.

주 문 문

※ 이 신고서는 마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신고서

처리기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접수

처리결과 확인

처리결과(이행) 증명

지출입금명세서

지출 요건(취득부서)

지급

수납

지급

210mm×297mm (복합지(100g/㎡) 또는 동등지(10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피해사실, [] 확인신청서, [] 확인서 ※ 해당이 여부만 답변 신청인이 하지 않습니다. <table><tr><td>발급번호 : 제</td><td>호</td><td>접수일시</td><td>처리기간</td></tr><tr><td>성명</td><td>성년출생일</td><td></td><td></td></tr><tr><td>피해자 주소</td><td></td><td></td><td></td></tr><tr><td>대상</td><td>단위</td><td></td><td></td></tr><tr><td>피해내용</td><td>피해 규모</td><td>지난의 종류</td><td></td></tr><tr><td></td><td>피해물의 소재지</td><td>피해 일시</td><td></td></tr><tr><td>용 드</td><td></td><td></td><td></td></tr><tr><td>제출처</td><td></td><td></td><td></td></tr><tr><td colspan="4">[울산광역시 북구 서해안 구로동 36-1, 북구지청에 준한 조화 제7호로에 따라 제1회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td></tr><tr><td></td><td></td><td>년 월 일</td><td></td></tr><tr><td></td><td></td><td>신청인 성명</td><td>(필수 또는 비)</td></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td><td></td></tr><tr><td></td><td></td><td>확인 사실을 확인함</td><td>년 월 일</td></tr><tr><td></td><td></td><td>울산광역시 북구청장</td><td>직인</td></tr><tr><td></td><td></td><td>주최사항</td><td></td></tr><tr><td></td><td></td><td>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td><td></td></tr><tr><td></td><td></td><td>2. 특별조사·시찰·특별조사지시서발급 후의 피해 지보지시명령서·확인서 또는 특별조사보고의 조사서는 제외합니다. 미 아 이 서에서 접수합니다. 시찰·조사·수집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td><td></td></tr><tr><td></td><td></td><td>3. 발급번호는 지리번호를 앞에 쓰고 발급번호를 붙여줍니다.</td><td></td></tr><tr><td></td><td></td><td>※ 예 : 0000 → 00-00000</td><td></td></tr><tr><td></td><td></td><td>4. 특별조사·시찰·특별조사지시서·시찰·조사·수집받은 「지보지시명령서」 및 복수 비공분할이도 병에 첨부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내역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td><td></td></tr><tr><td></td><td></td><td>처리절차</td><td></td></tr><tr><td></td><td></td><td>피해사실확인신청서 접수 → 접수 → 신청서 검토 → 확인서 발급 → 수납</td><td></td></tr><tr><td></td><td></td><td>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신청인 통</td><td></td></tr><tr><td></td><td></td><td>210mm×297mm [피상지 000/n]</td><td></td></tr></table>	발급번호 :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성명	성년출생일			피해자 주소				대상	단위			피해내용	피해 규모	지난의 종류			피해물의 소재지	피해 일시		용 드				제출처				[울산광역시 북구 서해안 구로동 36-1, 북구지청에 준한 조화 제7호로에 따라 제1회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필수 또는 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확인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주최사항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특별조사·시찰·특별조사지시서발급 후의 피해 지보지시명령서·확인서 또는 특별조사보고의 조사서는 제외합니다. 미 아 이 서에서 접수합니다. 시찰·조사·수집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리번호를 앞에 쓰고 발급번호를 붙여줍니다.				※ 예 : 0000 → 00-00000				4. 특별조사·시찰·특별조사지시서·시찰·조사·수집받은 「지보지시명령서」 및 복수 비공분할이도 병에 첨부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내역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피해사실확인신청서 접수 → 접수 → 신청서 검토 → 확인서 발급 → 수납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신청인 통				210mm×297mm [피상지 000/n]	
발급번호 :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성명	성년출생일																																																																																																				
피해자 주소																																																																																																					
대상	단위																																																																																																				
피해내용	피해 규모	지난의 종류																																																																																																			
	피해물의 소재지	피해 일시																																																																																																			
용 드																																																																																																					
제출처																																																																																																					
[울산광역시 북구 서해안 구로동 36-1, 북구지청에 준한 조화 제7호로에 따라 제1회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필수 또는 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확인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주최사항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특별조사·시찰·특별조사지시서발급 후의 피해 지보지시명령서·확인서 또는 특별조사보고의 조사서는 제외합니다. 미 아 이 서에서 접수합니다. 시찰·조사·수집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리번호를 앞에 쓰고 발급번호를 붙여줍니다.																																																																																																			
		※ 예 : 0000 → 00-00000																																																																																																			
		4. 특별조사·시찰·특별조사지시서·시찰·조사·수집받은 「지보지시명령서」 및 복수 비공분할이도 병에 첨부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내역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피해사실확인신청서 접수 → 접수 → 신청서 검토 → 확인서 발급 → 수납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신청인 통																																																																																																			
		210mm×297mm [피상지 000/n]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행	개정안																																																																																																																		
<신 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table><tr><th rowspan="2">발급 번호</th><th colspan="3">피해자</th><th colspan="3">피해 내용</th><th rowspan="2">출근</th><th rowspan="2">제출일</th></tr><tr><th>성명</th><th>주소</th><th>생년월일</th><th>대상</th><th>피해 규모</th><th>피해물량 소재지</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2026.10.15(목) 15:00	발급 번호	피해자			피해 내용			출근	제출일	성명	주소	생년월일	대상	피해 규모	피해물량 소재지																																																																																																			
발급 번호	피해자			피해 내용			출근	제출일																																																																																																												
	성명	주소	생년월일	대상	피해 규모	피해물량 소재지																																																																																																														

관계법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876호〕**

- 제7조(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
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장 심수정(241-789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363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3길 16		
점용 위치	○ 신천동 804	노선명	○ 대로 2-30
점용 목적	○ 신규 급수공사	점용 면적	○ L = 4.0m ○ A(일시) = 8.0㎡ ○ A(계속) = 4.0㎡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364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3길 16		
점용 위치	○ 송정동 1272	노선명	○ 소로 2-407
점용 목적	○ 신규 급수공사	점용 면적	○ L = 7.0m ○ A(일시) = 2.8㎡ ○ A(계속) = 0.014㎡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365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주)경동도시가스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		
점용 위치	○ 송정8길 1(송정동) ○ 신기16길 4(매곡동) ○ 신기9길 18(매곡동)	노선명	○ 소로 2-408 ○ 소로 2-356 ○ 소로 2-352
점용 목적	○ 도시가스 매설공사	점용 면적	○ L = 12.0m ○ A(일시) = 21.6㎡ ○ A(계속) = 0.97㎡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366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주)경동도시가스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		
점용 위치	○ 두부곡17길 15	노선명	○ 소로 3-99
점용 목적	○ 도시가스 매설확인	점용 면적	○ L = 5.0m ○ A(일시) = 10.0㎡ ○ A(계속) = 해당없음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368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 대표이사 손현익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		
점용 위치	○ 매곡동 470-1(약수2길 88) 인접도로	노선명	○ 중1-314 ○ 중2-549
점용 목적	○ 도시가스관 매설공사	점용 면적	○ L = 132.0m ○ A(일시) = 327.6㎡ ○ A(계속) = 28.56㎡
점용 기간	○ 일시	(당초) 2026. 09. 01. ~ 2026. 09. 30.(30일간)	
		(변경) 2026. 09. 01. ~ 2026. 10. 29.(59일간)	
	○ 계속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370호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신규 및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관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설치목적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사업명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4.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bukgu.ulsan.kr>)

5. 공고기간 : 2026. 10. 12. ~ 11. 1. (20일간)

6. 설치예정장소

설치예정장소	수 량	비고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효정1길)	이동식 1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송내5길 8)	이동식 1대	

※ 이동식CCTV로 북구 관내 불법투기지역 수시이동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북구청 자원순환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다. 제 출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자원순환과

라. 제출방법

o 우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자원순환과(연암동)

o 팩스 : 052-241-780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자원순환과 052-241-7804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의견 제출서

사 업 명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37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운영 실적이 없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 도입에 따른 자원봉사자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관련 조문 삭제(안 제5조)
- 나.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의3)
- 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아래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2026년 11월 4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통합돌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 출 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6층 통합돌봄과
- 전화번호 : 052)241-7632 / 팩스번호 : 052)241-7639
- 이 메 일 : apache8@korea.kr

6. 그 밖의 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가없**”을 “**대가 없**”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지역사회개발·발전**”을 “**지역사회 개발·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권익증진**”을 “**권익 증진**”으로, “**육성보호**”를 “**육성·보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을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범죄예방**”을 “**범죄 예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를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체육진흥**”을 “**체육 진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를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로 한다.

제4조 중 “**지원하여야**”를 “**지원해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북구(이하“구”**”를 “**북구(이하 “구”**”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선임하여야**”를 “**선임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운영하여야**”를 “**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는 「민법」 제40조**”를 “**센터는 「민법」 제40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등록하여야**”를 “**등록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한다.

제11조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각각 “**노력해야**”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직전 연도에 구에서 1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센터 소속 북구 주민은

자원봉사활동실적 1시간당 1,000마일리지를 받는다. 이 경우 1마일리지는 1원의 가치를 가진다.

③ 구청장은 마일리지를 동일한 가치의 지역화폐로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각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원하여야”를 “지원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u>대가없이</u>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 ----- <u>대가 없</u> -----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지역사회개발·발전</u> 에 관한 활동	2. <u>지역사회 개발·발전</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사회적 취약계층의 <u>권익증진</u> 및 청소년의 <u>육성보호</u> 에 관한 활동	4. ----- <u>권익 증진</u> ----- ----- <u>육성·보호</u>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u>인권옹호 및 평화구현</u> 에 관한 활동	6. <u>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u> ----- -----
7. <u>범죄예방</u> 및 선도에 관한 활동	7. <u>범죄 예방</u>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9. <u>재난관리 및 재해구호</u> 에 관한 활동	9. <u>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u> ----- -----
10. 문화·관광·예술 및 <u>체육진흥</u> 에 관한 활동	10. ----- <u>체육 진흥</u> ----- -----
11. <u>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u> 에 관한	11. <u>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u> -----

활동

12. ~ 15. (생략)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①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원

12. ~ 15. (현행과 같음)

제4조(구청장의 책무) -----

----- 지원해야 -----.

<삭 제>

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 6. (생략)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 ① (생략)

②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

제6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

-----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1. ----- 북구(이하 “구”-----
-

2. ~ 6. (현행과 같음)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선임
해야 -----.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

----- 운영해야 ---. -----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 ⑥ (생략)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생략)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② (현행과 같음)

③ -----
----- 센터는 「민법」 제40조 -----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등록해야 -----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

----- 제출해야 -----.
-----.

② -----

----- 제출해야 -----.

③ -----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
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
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
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
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
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
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설>

제16조(보험가입 등) ① 구청장은 「비
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
된 단체 또는 센터에 소속한 자원봉

보존해야 -----
-----.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

----- 「비영리민
간단체 지원법」-----
-----.

제12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
----- 노력해야
-----.

② -----
----- 노력해야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
기 위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
자에게 자원봉사마일리지(이하 “마
일리지”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직전 연도에 구에서 1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센터 소속 북구
주민은 자원봉사활동실적 1시간당
1,000마일리지를 받는다. 이 경우 1
마일리지는 1원의 가치를 가진다.

③ 구청장은 마일리지를 동일한 가
치의 지역화폐로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 등) ①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센터장은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생략)

-----.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신
청해야 -----.
2. -----

-- 지원해야 -----.
3.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

----- 체결해야 -----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제12조, 제13조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따른 보상금 지급 비용 발생
- 2. 비용추계 전제 : 1인당 최소 10,000원, 최대 지급액은 100,000원으로 산정
- 3.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합계
총비용(a-b)							
세입	소계(a)						
	국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 방 세						
	세외수입						
	기타						
세출	소계(b)	52,000	60,000	70,000	70,000	70,000	322,000
	정책사업비	52,000	60,000	70,000	70,000	70,000	322,000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 2025년 봉사시간(10시간 이상) 기준 : 351,242,000원(7,599명 / 501,768시간)
 - ☞ 15% 예산편성 시 : 52백만원 소요
- 5.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위한 전년도 자원봉사활동 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소요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 7. 작성자 : 통합돌봄과 행정6급 정승혁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제12조, 제14조 관련)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합계
의존 재원	소계						
	국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52,000	60,000	70,000	70,000	70,000	322,000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합계		52,000	60,000	70,000	70,000	70,000	322,000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구비 예산 확보를 통해 소요 재원 조달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해당없음

5. 작성자 : 통합돌봄과 행정6급 정승혁

현행 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의 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2. 5.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2. 5. 21>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12. 5. 21>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12. 5. 21>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12. 5. 21>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 장려, 연계 및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개정 12. 5. 21>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2. 5. 21>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개정 12. 5. 21>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지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 하여야 한다.<개정 12. 5. 21>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12. 5. 21>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2. 5. 21>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의결<개정 12. 5. 21>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한다.<개정 12. 5. 21>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8·9·16, 12. 3. 5>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2. 5. 21>

제2장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제6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를 둔다.<개정 12. 5. 21>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개정 12. 5. 21>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 ①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에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12. 5. 21>

②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개정 12. 5. 21>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개정 12. 5. 21>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2. 5. 21>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개정 12. 5. 21>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개정 12. 5. 21>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11·8·5, 12. 5. 21>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2. 5. 21>

제9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2. 5. 21>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2. 5. 21>

③ 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자원봉사 진흥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2. 5. 21>

제12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2. 5. 21>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포상)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의2(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 대하여 구에서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비율 및 적용기준 등은 개별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11·8·5]

제15조(경력 인정 등) 구청장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 등) ①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또는 센터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개정 12. 5. 21>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센터장은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2. 5. 21>

2.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2. 5. 21>

②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2. 5. 21>

제17조(실제 비용 지급) 센터장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표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표시)		의견	비고
	☐ 찬성	☐ 반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379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운영 실적이 없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명확히 하여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관련 조문 삭제(안 제2조~제5조)
- 나.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 지급 규정 신설(안 제19조)
- 다.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 신설(안 별표 5)
- 라.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2026년 11월 4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통합돌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6층 통합돌봄과
- 전화번호 : 052)241-7632 / 팩스번호 : 052)241-7639
- 이 메 일 : apache8@korea.kr

6. 그 밖의 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중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를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로 한다.

제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례 제17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제19조제4항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구(區)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북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 교통비: 시내일반버스 왕복요금(현금) 기준 • 급식비: 공무원 급식비 기준 • 활동용품비 등 (단, 1일 4시간 이상 봉사 시 교통비·급식비·활동용품비 지급)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①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업무담당 국장,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장 2. 위촉직 위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자원봉사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대학교수, 시민단체 활동자, 기업관계자, 자원봉사단체 활동자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삭 제>

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
서장으로 한다.

제3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삭 제>

1. 위원 스스로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삭 제>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기구와 정원)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무국에는 센터장 1명과 직원을 6
 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울산광
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② (생략)

③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그 밖에 자원봉사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
 로 센터장이 위촉하고, 성별구성비
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④·⑤ (생략)

제19조(자원봉사활동비 및 실제 비용
 지급) ①·② (생략)

③ 삭제

<신설>

<신설>

제6조(기구와 정원) -----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④·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자원봉사활동비 및 실제 비용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④ 조례 제17조에 따라 자원봉사자
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제19조제4항 관련)

	<table><tr><th>지 급 대 상</th><th>지 급 기 준</th></tr><tr><td>구(區)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복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td><td> • 교통비: 시내일반버스 왕복요금 (현금) 기준 • 급식비: 공무원 급식비 기준 • 활동용품비 등 (당 1일 4시간 이상 봉사 시 교통비, 급식비, 활동용품비 지급) </td></tr></table>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구(區)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복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 교통비: 시내일반버스 왕복요금 (현금) 기준 • 급식비: 공무원 급식비 기준 • 활동용품비 등 (당 1일 4시간 이상 봉사 시 교통비, 급식비, 활동용품비 지급)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구(區)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복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 교통비: 시내일반버스 왕복요금 (현금) 기준 • 급식비: 공무원 급식비 기준 • 활동용품비 등 (당 1일 4시간 이상 봉사 시 교통비, 급식비, 활동용품비 지급)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복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실제 비용 지급) 센터장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복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①·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 성 자 : 통합돌봄과 행정6급 정승혁(241-7632)

현행 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①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개정 12. 5. 21., 2025. 5. 1.>

1. 당연직 위원: 업무담당 국장,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장<개정 12. 5. 21>

2. 위촉직 위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자원봉사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대학교수, 시민단체 활동자, 기업관계자, 자원봉사단체 활동자 등)<개정 12. 5. 2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5. 5. 1.>

제3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2. 5. 21>

제4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12. 5. 21>

1. 위원 스스로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개정 12. 5. 21., 2025. 5. 1.>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제6조(기구와 정원)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무국에는 센터장 1명과 직원을 6명 이내로 둘 수 있다.<개정 2025. 5. 1.>

제7조(직원의 자격기준)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자격기준은 센터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5. 5. 1.>

제8조(직원의 채용) 센터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개정 12. 5. 21. 2025. 5. 1.>

제9조(겸직제한)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0조(직원의 복무) ①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5. 5. 1.>

② 위탁 운영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제11조(공인비치) ① 센터에는 센터의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 가로로 써야하며, 그 규격은 2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2. 5. 21>

②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과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5. 5. 1.>

③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그 밖에 자원봉사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센터장이 위촉하고,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개정 12. 5. 21. 2025. 5. 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12. 5. 21>

제14조(운영위원의 해촉)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12. 5. 21>

1. 위원 스스로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개정 12. 5. 21., 2025. 5. 1.>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개정 15.12.31.>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5. 1.>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12. 5. 21. 2025. 5. 1.>

제1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센터의 발전에 관한 시책 수립
2.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자산 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5. 5. 1.>

제18조(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의 관리) ① 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관리·운영 해야 한다.<개정 2025. 5. 1.>

② 제1항의 자원봉사시스템 관리사항은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등록,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등 등록·열람, 타 센터와 자료공유 및 업무협력 사항 등이다.

③ 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개정 12. 5. 21, 15.12.31., 2025. 5. 1.>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9조(자원봉사활동비 및 실제 비용 지급)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급받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5. 1.>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수리, 의료봉사 등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자재나 의약품 대금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5. 1.>

③<삭제 15.12.31.>

제20조(보험가입)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구청장은 자원봉사보험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보험단가, 전년도 자원봉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 대상인원을 확정해야 한다.<개정 2025. 5. 1.>

② 구청장은 센터에 보험가입 규모를 통보하고 센터에서는 보험가입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개정 2025. 5. 1.>

③ 센터장은 지역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우선 공제가입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개정 2025. 5. 1.>

제21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산업시찰, 포상자 추천 등 우대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표 4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서식 및 대장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개정 2025. 5. 1.>

1.<삭제 15.12.31.>

2. 자원봉사단체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 4.<삭제 15.12.31.>
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381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3길 16		
점용 위치	○ 매곡동 952	노선명	○ 소로 2-356
점용 목적	○ 신규 급수공사	점용 면적	○ L = 4.0m ○ A(일시) = 8.0㎡ ○ A(계속) = 4.0㎡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389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대운건설(주)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모두박길 1-4		
점용 위치	○ 화봉동 611-6	노선명	○ 소로 2-484
점용 목적	○ 배수설비 설치 및 하수관로 매설	점용 면적	○ L = 6.0m ○ A(일시) = 10.8㎡ ○ A(계속) = 0.9㎡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1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390호

매곡공원 조성사업 보상 최종 협의 공시송달 공고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한 『매곡공원 조성사업』의 편입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받을 자의 사망,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 명: 매곡공원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울산광역시(보상: 울산광역시북구청장)
 다. 사업 규모: 울산광역시 매곡동 474-4 일원
 라. 사업 기간: 2022 ~ 사업완료시

2. 공고기간: 2026. 10. 15.(목) ~ 10. 29.(목)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물건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474-4	답	4	100	우미개발(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09	-	-	-	

※ 소유자가 사망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상속)가 완료되어야 보상 협의 가능

4. 공고내용

- 가. 협의기간: 2026. 10. 15.(목) ~ 10. 29.(목)

나. 협의방법: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개별협의

다. 보상금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 보상금 산정방법: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보상금 지급방법: 현금보상

※ 계약체결 시 소유권 등기이전 완료 후 전액 일시불 계좌입금

라. 계약 및 지급조건: 구비서류 제출 및 보상금 청구

마. 보상계약 체결 장소

- 장 소: 북구청 공원녹지과(2층, ☎052-241-7942)
- 구비서류: 인감증명서(매도용, 매수자:울산광역시) 1부, 인감증명서(일반용) 1부, 주민등록초본2통(전체 주소이력포함), 등기부등본 1부, 토지대장 1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지 참 물: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사본(소유자명의)

5.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소유권 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공원녹지과 공원팀(☎052-241-79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